

특별시·통합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 고시 제 호

주민대피지역의 지정(해제) 고시

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 제10조의2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대피지역을 지정(해제)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·
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
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·
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

주민대피지역 지정(해제)			주민대피소			지정(해제) 사유	비고
명칭	위치	침수 예정 면적(ha)	명칭	위치	수용인원 (명)		